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1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서영석・박지원・윤건영

홍기원 · 소병훈 · 이해식

윤종군 · 김원이 · 전진숙

최기상 • 박홍배 • 정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

임(안 제7조의4).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조제1항 제2호의 범죄(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 심의대상, 구성,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
	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
	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
	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
	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
	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
	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
	<u>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u>
	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
	호 • 제1호의2 • 제2호 및 제95
	조제1항제2호의 범죄(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 회의 설치·운용, 심의대상, 구 성,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